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568호 2018. 08. 09.(목)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904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2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14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 고시.....4
- 사천시 고시 제142호 사천시 누리원 공설자연장지 조성 및 사용 고시.....5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568호(2)

공 고

사천시 공고 제2018 - 904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에 의한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동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 8. 9.

사 천 시 장

1. 공 고 명 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8. 8. 9. ~ 2018. 8. 24.(15일간)
3. 공 고 대 상

신청대상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일자	운행정지 사유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93버1502	포터II시티밴	김*수	2018. 8. 1.	소유자요청(불명자 운행)

4. 공 고 내 용

-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공고하오니, 차량운행자께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2)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

사 천 시 공 보

제568호(3)

칙) 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동법 제82조(벌칙)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교통행정과(055-831-3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568호(4)

고 시

사천시 고시 제2018 - 14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 8. 9.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허가번호 : 제2018 - 4호
2. 점용·사용 허가 연월일 : 2018년 8월 8일
3. 점용·사용의 목적
 - 유람선 접안용 부잔교
4. 점용·사용의 장소
 - 경남 사천시 대방동 681-2번지선 공유수면
5. 점용·사용의 면적 : 1,375.44㎡ (직접 439.84, 간접 : 935.60)
6. 점용·사용의 기간 : 2018. 08. 24. ~ 2023. 08. 23. (5년간)
7.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이삼수 외 17인
 - 주 소 : 경남 사천시 유람선길 42

사 천 시 공 보

제568호(5)

고 시

고시 제2018 - 142호

사천시 누리원 공설자연장지 조성 및 사용 고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천시장이 조성한 사천시 누리원 공설자연장지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8. 9.

사 천 시 장

1. 자연장지의 명칭·위치·면적·규모

명 칭	위 치	면 적	규 모	비 고
사천시 누리원 (공설자연장지)	사천시 해안관광로208-66	잔디형 16,000㎡	잔디형 8,696기	

※ 위치도 : [붙임1] 참조

2. 자연장지 사용료, 사용기간, 규격 등

가. 사용료 및 사용기간

종류	구분	매장인원(인)	사용료	비 고
잔디형	개인	1	300,000원	- 30년 기준 - 기간연장 · 15년씩, 2회 · 사용료의 50%
	가족	2	600,000원	
	가족	4	1,200,000원	
	가족	6	1,800,000원	

※ 가족장은 최초 안장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68호(6)

나. 자연장지 안장규격

구 분	매 장 인원(인)	단 위 (개소)	안 장 규 격 (m)	면 적 (㎡)	비 고
개 인	1	1	0.5×0.5	0.25	
가 족	2	1	0.5×1.0	0.50	
가 족	4	1	1.0×1.0	1.00	
가 족	6	1	1.0×1.5	1.50	

3. 사용료의 납부

가. 사용계약 기간 동안의 사용료는 선납

나. 사용계약 기간 연장시 납부하는 사용료는 계약기간 연장당시의 사용료를 적용

다. 계약 연장시 2개월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주며 이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며 매장유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절차에 따른다.

4. 사용료의 감면(사천시 조례)

가. 관내 거주자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장소에 봉안 또는 매장하였다가 옮겨오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3) 만100세 이상의 사람

4) 시신을 처리할 연고자가 없거나,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68호(7)

5. 자연장지 사용대상

- 가. 사망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등록기준지를 사천시에 두고 사망한 사람
- 나. 사천시 관할 구역에서 사망한 외국인
- 다. 사천시 관할 구역 또는 공설묘지에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자연장 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시장이 사용대상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마. 가~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설자연장지에 안치된 배우자와 같이 자연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할 수 있다.

6. 자연장지 계약 및 안장 순서

가. 자연장지 계약

- 1) 사용(개장) 시기는 2018년 9월 3일부터 사용(연중 무휴)
- 2) 설, 추석 당일은 휴무 함

나. 안장 순서

- 1) 화장한 유골의 골분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은 금지함.
- 2) 사용허가 신청 시에는 신청서에 화장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자연장 안장규격은 유족이 선택.
- 3) 입지여건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안장유형별로 미리 구획 된 구역부터 순차적으로 일련번호순으로 사용함.

7. 자연장지 사용방법 및 절차 등

가. 사용방법 등

- 1) 자연장의 1기당 사용면적은 가로 50cm, 세로 50cm를 사용하며 안치 면적은 가로 30cm, 세로 30cm 이하를 사용함.

사 천 시 공 보

제568호(8)

- 2)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흙과 혼합하여 매장**하고, 용기 사용 시에는 용기의 빈 공간을 흙으로 채워서 매장하여야 함.
- 3) 용기의 재질은 생분해성 수지제품이나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으로 하고,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cm 이하여야 하며, 유품은 함께 매장해서는 아니 됨.
- 4) 자연장의 잔디형은 개인용과 **가족용(2~6인용)**으로 나누며 **가족용의 경우 우선 1기로도 먼저 안치가 가능하나 사용기간은 최초 자연장한 날을 기준으로 함.**
- 5)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15년씩 2회 기간연장을 할 수 있으며 기간 종료 시 모든 권한은 사천시에 귀속됨.
- 6) 자연장에 안장된 골분의 **위치는 자연재해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함.**
- 7)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석은 **오석을 사용**하며, 크기는 가로 20cm, 세로 10cm, 깊이 15cm로 하며 지표면에서 3cm 이상 돌출되지 않도록 땅에 세우는 방법으로 설치.
- 8) 표지석 내용의 기록은 [붙임2]에 첨부된 표준방식에 따른다.
- 9) 자연장지의 표지석, 유골함, 유골개장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

나. 사용절차

- ① 방문 → ② 현장 안내(구역 안내 및 유형 선택) → ③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 설명 → ④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료 납부 → ⑤ 안치

사 천 시 공 보

제568호(9)

8. 사용종료와 환급

- 가. 사용기간의 연장 의사가 없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다. 자연장지 내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라. 유족 등이 계약기간 내 사용종료를 요청한 경우
- 마. 환급은 사용료를 연 단위로 나누어서 실제 사용한 연수의 금액을 감하고 환급

9. 기타사항

가. 추모방법

- 1) 자연장지에서는 음식반입 및 제사행위를 할 수 없으며, 추모식은 정해진 공동 추모단에서 진행.
- 2) 추모는 간소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함.

나. 자연장지내에서의 행위 제한

- 1) 정해진 장소 외에서의 제사 행위
- 2) 꽃장식물 및 제단, 비석 등의 설치
- 3) 취사, 소풍, 야영 등을 하는 행위
- 4) 향대, 초 등 추모용품의 휴대 및 설치
- 5) 과도한 호곡 또는 대형화환 반입 행위
- 6) 자연장지를 고의적으로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 7)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출입하는 행위
- 8) 상업적인 물품이나 인쇄물을 판매, 제공하는 행위
- 9) 그 밖에 자연장지 운영·관리에 방해가 되는 사항

사 천 시 공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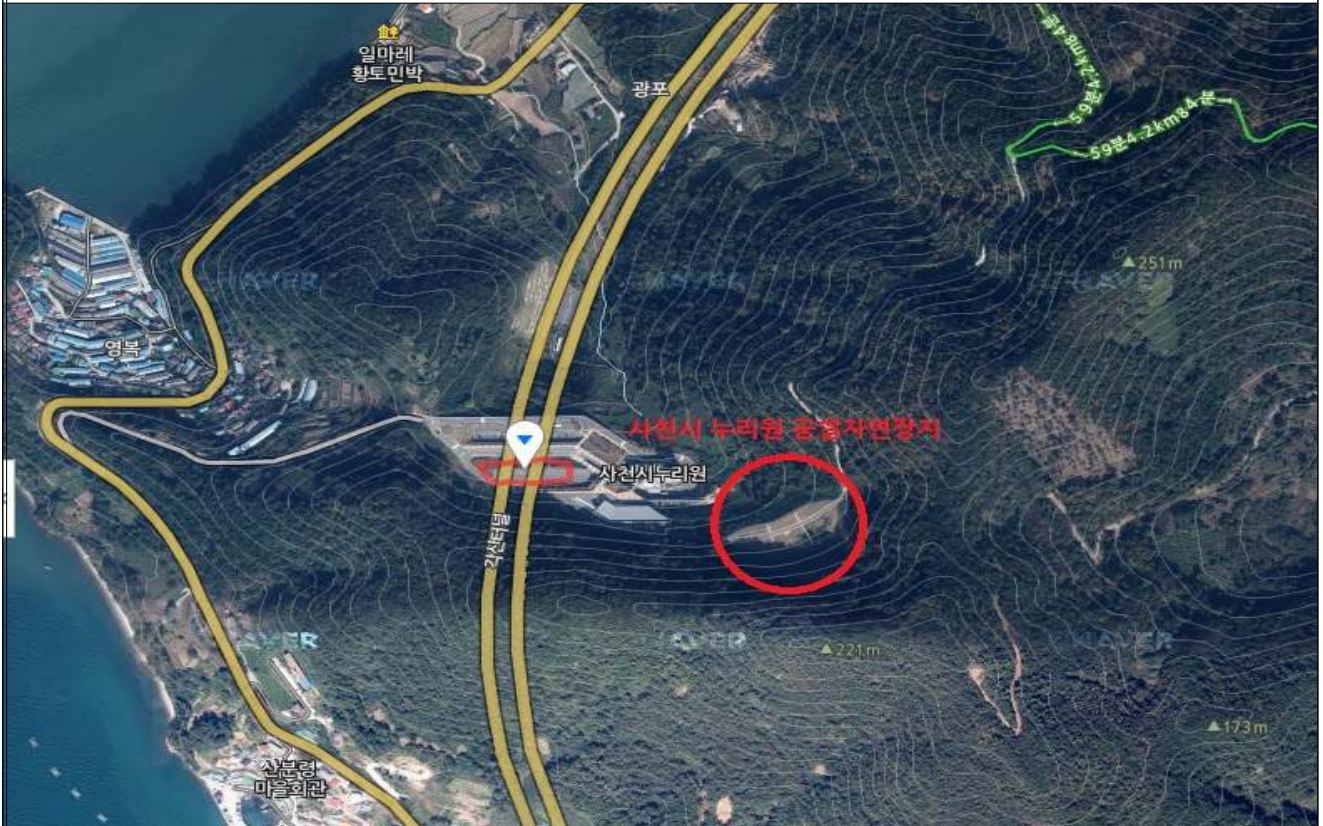
제 568 호 (10)

[붙임1]

위 치 도

□ 소재지 : 경남 사천시 해안관광로 208-66(사천시 누리원내)

사천시 누리원 공설자연장지



사 천 시 공 보

제568호(11)

[붙임2]

